

여성의 이중부담과 유급노동시간의 주변화*: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손문금**

본 연구는 여성이 가족과 일을 병행하려 할 때 안게 되는 이중부담의 양과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차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시간사용구조를 살펴보고, 이중부담이 노동시간양·노동시간대·노동장소로 나타나는 여성 유급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자료는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맞벌이 가구의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 평균 1시간 51분 많은 총노동시간을 가지면서 주당 약 13시간의 이중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간사용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었다. 즉, 여성은 경제활동에 참여한다할지라도 무급노동시간의 89%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여성의 노동시간은 가족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전더화된 생활시간사용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기준연구결과와 다르게 가내하청/재택근무, 자영, 무급가족종사와 같은 종사 상지위와 미취학자녀의 존재는 여성에게 유급노동시간을 조절하는 기재가 되지 못했고 무급노동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점이 한국사회 여성의 이중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맞벌이가구 여성은 무급노동에의 일차적 책임으로 남성보다 야간유급노동이나 휴일유급노동시간을 줄이고, 단시간노동을 선택하며,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을 길게 하면서 가족생활시간을 확보하는 유급노동시간 조절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방식은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의 불안정성을 만들어내고 주변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서구사회와 비교하면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야간노동과 휴일노동, 장시간노동이라는 남성적 노동조건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매/서비스직의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여성들, 가내하청이나 재택근무를 하는 임금근로자 여성들, 학력이 낮은 기능/조립직과 단순노무직 여성들은 야간노동이나 휴일노동,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이 길뿐 아니라 절대적인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도 길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취학자녀의 존재가 이러한 여성적 유급노동시간의 특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이며, 2004년 2월 전주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인구도시연구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기도 하다. 학위논문을 지도해 주신 장상희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줄곧 논문에 대해 유익한 충고를 마다 않으신 박경숙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세심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논평자들께도 감사드린다.

**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핵심단어: 이중부담, 맞벌이가구,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 여성노동의 주변화

I. 기존논의와 연구문제

1. 이중부담과 여성시간의 특징

생활시간에서 남여간의 성역할 전문화된 시간사용(gender specialized time use)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의 사회학적 관심을 남성과 여성사이의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¹⁾시간의 분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Bittman & Wajcman, 2000: 167).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논의는 서구사회에서 맞벌이 가족(dual earner family)의 출현과 그 증가에 따라 기혼의 취업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대한 기존의 책임에 유급노동을 더하게 되었고 필연적으로 여성이 더욱 많이 일하고 있다는 이중부담의 문제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남성의 경제활동이 가족을 유지하는데 문제되지 않는 반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족을 양립시키기 위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중부담(dual burden)의 문제이다. 이중부담은 근대가족의 성역할 분담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한다할지라도 가족의 일을 여전히 여성의 일차적 책임으로 남겨두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이중부담의 문제는 여성이 유급노동을하게 되었을 때 무급노동이 누구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사회에서는 부부가 다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 가족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1주당 15시간, 1년에 한 달 정도 더 일하고 있었다(Hochschild, 1989: 36-47). 이는 여성이 유급노동시간을 늘리는데 비해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이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미국 사회의 생활시간분석에서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1965년 주당 11.3시간에서 1995년 15.6시간으로 늘어났을 뿐이다(Robinson & Godbey, 1997: 329). 또한 1992년 서구 10개국의 생활시간 일기자료에 대한 분석에서도 무급노동에 대한 여성들의 평균 뜲은 76%로 여성이 무급노동의 대부분을 계속 책임지고 있었다

1) 무급노동(unpaid work)은 가사노동이나 세대내의 자급생산노동 등 생산 노동시장 바깥에서 행해지면서 경제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노동을 가리킨다. 1995년 UN세계여성대회에서는 그것을 통계적으로 수량화하여 그 주요 당사자인 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공정화를 과제로 내세웠다(우에노 치즈코·조한혜정, 2004: 187).

(Bittman & Wajcman, 2000: 175).

한국사회에서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증가하였지만²⁾ 여성은 여전히 대부분의 무급노동을 책임지고 있으며, 남편들의 가사노동참여는 아내의 취업여부와 관련이 없다는 논의들이 있다(정자환, 2002; 함인희·한정자, 2001; 박민자, 1992; 한경미, 1991; 이효재·지은희, 1988).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철저히 아내들의 몫이거나 또는 아내가 위임한 다른 여성(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들로 남편이나 자녀들의 도움은 아주 미미하였다. 또한 남성의 학력이 높고 직업 위세가 높을수록 그리고 젊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약간 늘어나지만 부인의 취업 유무 및 취업내용과는 관계가 없었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유급노동에 참여하게 될 때에도 무급노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여전히 부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여성으로 하여금 생활시간을 남성과 다르게 조직하도록 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³⁾

무급노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으로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은 남성과 달리 가족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이 가족상황과 무관하게 형성되는 반면,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은 가사조력자(주로 친정어머니나 고용인)나, 가족유형, 가족 수, 미취학자녀의 유무, 자녀수, 막내자녀의 연령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은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결합시키기 위해 유급 노동의 방식을 조절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 출산, 육아시점을 전후로 고용 형태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은기수·박수미, 2002: 125; 신경아, 2001: 109; 문유경, 1997: 67), 여성은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때 유급노동시간을 줄이고 무급노동시간을 늘리며 이러한 조건을 보장하는 노동형태를 선호한다(성지미, 2002: 165). 즉, 여성의 노동시간사용은 개인이 가진 인적자원이나 공적 영역의 환경에 의해서보다는 가족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특히 무급노동의 필요에 의해 유급노동시간을 조절하는 반면 남성의 시간사용은 가사와는 무관하게 시간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노부모, 가족 일을 일차적으로 여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여성의 노동공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49.7%에 이르렀으며 이를 혼인상태 별로 구분하여 보면 1985년에서 2002년 현재까지 미혼여성은 44.7%에서 50.6%로, 유배우자여성은 41.0%에서 49.4%로 변화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DB). 같은 기간동안 미혼여성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5.9%증가한 반면, 유배우자여성은 8.4%증가하여 미혼여성을 앞지르고 있다.

3) 한편에서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시대적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거나 여성들이 노동시장 등 공적 영역에 참여하면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공동으로 분담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논의들이 있기도 하다(김미하, 1990; 조미환, 1996; 조성운, 1998; 조옥라·신경아, 2001).

라 노동시장에 남게 된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의 일을 위해 소비한 시간은 여성에게 유급노동에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고, 가족일과 직장일을 병행할 수 있는 자영업(무급가족종사), 시간제노동, 가내하청의 고용형태가 유배우 여성들에게 선호된다. 이에 여성의 종사상지위분포에서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25세 이후 급감하며 30대 중반이후 노동시장에 나오는 여성들은 대체로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임금근로자,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재취업하고 있다(김영옥·김경희, 2004: 109).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현대사회로 올수록 유급노동시간 및 무급노동시간에 있어서 성별 수렵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Gershuny, 2000; Bianchi & Milkie & Sayer & Robinson, 2000; Nock & Kingston, 1989). 이들은 세계 각국의 시간사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이 함께 결합될 때 남성과 여성 사이에 총노동시간⁴⁾의 평균차이가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들은 가사노동 하는 데 쓰는 시간을 계속 줄여 왔으며 남성들은 적은 양이긴 하지만 무급노동시간을 늘려왔다. 노동시간의 구성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은 좀더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무급노동시간이 감소하게 되며, 남성은 좀더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유급노동시간이 감소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생활양식이 수렵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여전히 성차는 존재하지만 그 차이는 적어지고 있으며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성(gender)이 사회적 범주화의 정도를 설명하는 정도가 다른 변수들에 의한 사회적 범주화의 정도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학력이나 연령, 직업이나 종사상지위, 미취학자녀의 유무나 자녀수와 같은 개인이 가진 상황이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나 무급노동과 유급노동을 결합시키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의 차이가 남성과 여성에게 같은 방식으로 개인의 일상생활시간을 설명해주는 변수로 등장할 수 있음을 가정한다.

이러한 논쟁점이 있지만 한국사회의 기존논의에서는 아직까지 여성의 시간과 남성의 시간이 어떤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간자료를 가지고 검증한 연구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맞벌이가구 여성의 이중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고, 남성과

4) 이중부담은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의 불평등과 초과부담을 말한다. 따라서 이중부담에 대한 논의는 검증의 지표로서 총노동시간을 사용한다. 총노동시간을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의 합으로 보고 노동시간에 있어서 성평등의 관점을 채택한 학자는 Schor(1992)이다.

여성의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과정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의 일상생활시간 사용구조가 같은 원리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원리에 의해 움직여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구문제 1 : 남성과 여성의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의 총량은 대략 같다.

연구문제 2 : 남성과 여성의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을 설명해 주는 변수가 서로 같다.

2. 여성 유급노동시간의 특징

여성이 유급노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무급노동을 책임지는 이중부담 (dual burden)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으로 하여금 이중노동을 감당하기 위해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노동에 그들의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며 이것이 여성유급노동시간의 특징을 이룬다. 가족생활시간과 사회적 노동시간이 만들어내는 갈등 속에서 맞벌이가구의 여성들이 가지는 사회적 노동의 성격을 시간과의 관계에서 드러내고 있는 기존논의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중부담을 가지는 기혼의 취업여성은 유급노동시간의 양을 조절하여 가족유지를 위해 필요한 무급노동시간을 확보한다고 한다(Fagan: 2001; Glucksman, 1998; 신경아, 2001). 유급노동시간양은 다른 활동들을 위해 남겨진 시간의 양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을 가진 맞벌이가구의 여성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족을 위해 남겨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의 양을 조절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단시간노동을 선택하고 따라서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은 남성보다 항상 적게 나타난다. 기혼여성의 약 60%가 시간제를 원하고 있었으며(문유경, 1997: 66-67), 특히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여성이 단시간근로를 선호하며(황수경, 2003: 371),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84.5%가 비경제적인 이유 즉 자녀보육 및 가사와 관련된 이유로 파트타임을 선택한다(통계청, 통계DB, 『사회통계조사』, 2000). 단시간근로는 무급노동 수행이라는 현실적 제약 하에서 기혼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가정-직장 병립형 고용형태로 여성들에게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단시간노동 선택의 경향은 기존논의에서 시간제노동에서의 여성비율로 제시된다. 이는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주당유급노동시간

을 기준으로 시간제노동과 전일제노동이 구분되어 제시되기 때문이다.⁵⁾ 따라서 여성의 단시간노동의 경향은 주당유급노동시간의 양으로 제시될 수 있다.

한편 여성은 주당 유급노동시간의 양을 조절할 수밖에 없지만 주당 유급노동 시간은 다시 하루 24시간 안에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결합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루노동시간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주당노동시간이 18시간이라 할지라도 이틀에 걸쳐 9시간씩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루에 3시간씩 6일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집근처의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점심 때 자녀들에게 밥을 차려주려 집에 가는 것이 허용되며(김경애, 1999: 193)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의 위치에 있는 여성들은 유급노동 사이사이에 필요한 무급노동을 행한다(박민자, 1988). 이러한 여성의 노동상황에 대한 묘사는 여성은 두 가지 책임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하는 동안 언제든지 다른 일이 끼어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주당 유급노동시간은 다시 하루 24시간 안에서 무급노동시간과의 고려 안에서 재분배되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여성의 단시간노동의 경향은 하루유급노동시간의 양으로도 제시될 수 있다.

둘째, 언제 일하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무급노동과 개인적 여가시간을 조직하고 경험하는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Hermesh, 1998: 321) 맞벌이가구의 여성들은 언제 일할 것인가 하는 노동시간대의 조절을 시도 할 수 있다. 노동시간대의 조절은 개인의 하루의 생활시간 속에서 언제 일하는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말노동이나 야간노동, 교대근무와 같은 시간스케줄은 가족공유시간과 사회적 활동들에의 참여가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여성들은 가족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노동을 피할 것이다(Fagan: 2001).

한국사회에서도 전문직 여성의 경우에 한정된 경우이긴 하지만 여성은 직장과 가정 영역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주된 방법으로 일과 가정을 철저히 분리하여 하루 일과 시간이외에 저녁, 밤시간의 업무는 되도록 피하고 주말에는 온통 가족과 지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진수희, 1999: 53). 또한 근무시간의 절대량은 직장-가정갈등의 정도와 큰 상관이 없으나 시간외 근무, 주말근무, 직장행사로 인한 늦은 귀가는 직장-가정갈등의 유의미한 요인이라는 점에서(최희경, 1995: 50) 여성들은 이러한 시간을 회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5) 우리나라에서 유급노동시간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조사』,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와 『소규모사업체 노동통계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 등이 있다. 이러한 조사들에서는 주당 35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을 시간제 노동자로 분류한다.

한국사회에서는 조직을 우선시하는 남성들의 정규근무시간을 넘어선 노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김효선, 1987; 김은희, 1993; 이숙현, 1995) 한 가족단위에서 기혼의 취업여성이 휴일노동이나 야간노동과 같은 근무를 선택할 여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생활에 필요한 무급노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맞벌이가구의 여성들은 부부 전체의 노동시간을 통해 가족시간을 조직하기 희망하기 때문이다(Clarkberg & Moen: 2001).

셋째, 노동이 일어나는 장소와 관련하여 여성들은 무급노동의 책임자라는 기존의 역할 때문에 집안이 그들이 있어야 할 공간으로 인식되며 따라서 유급노동도 또한 집에서 일어날 확률이 많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유급노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재택근무를 선택한다는 연구(신경아, 2001)나 남성들의 아내에 대한 섹슈얼리티 통제를 위해 자녀들보기에 편리하거나 다른 남성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집밖에서의 노동보다는 집안에서의 노동에 호의적이라는 연구(김경애, 1999)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이 집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동시간양과 노동시간대, 노동장소를 통한 유급노동시간의 조절은 무급노동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특성이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 노동시간의 특징에 대한 논의들은 한국사회에서 심층면접을 통한 결과로 제시되고 있거나 양적 자료를 가지고 제시되는 경우에는 전체 여성노동자의 특성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 하루의 생활시간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겸종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가내하청이나 재택근로자 여성의 연령이 자녀의 보살핌이 필요한 30대와 40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이러한 노동형태가 무급노동과 유급노동을 결합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유추한다. 또한 여성들이 가진 가족상황과 인적상황, 노동상황 등이 어떻게 이러한 유급노동시간의 특성에 영향을 주면서 다양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노동시간양, 노동시간대, 노동장소로 나타나는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의 특성을 맞벌이가구를 중심으로 경험적으로 겸종하고 인적상황, 노동상황, 가족상황에 따라 여성 내부에 어떤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한다.

연구문제 1 : 여성은 무급노동에의 책임 때문에 남성과 비교하여 유급 노동시간이 짧고, 야간유급노동과 휴일유급노동시간이 적으며,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이 길다.

연구문제 2 : 여성은 인적상황, 노동상황, 가족상황에 따라서 노동시간 양, 노

동시간대, 노동장소로 나타나는 유급노동시간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II. 연구방법

1. 자료와 분석대상

1) 자료

본 논문의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이며, 이 자료는 시간일기 방법에 의해 정보가 수집되었다. 시간일기법은 시간수지(time budget) 정보를 모으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응답자들이 자신의 언어로 직접 24시간동안 행한 활동을 기입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조사자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고(성적이거나 생리적인 활동은 보고하지 않음), 말하고자 하는 것 이상을 알 수 없으며 보고를 왜곡하여도 통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일기 자료로부터 도출되는 강력한 설득력은 시간에 대한 제로-섬(zero-sum)소유로부터 나온다. 시간일기 자료의 중요한 특징은 그날의 24시간이 모두 보고 되며 모든 인간의 행동이 포착되고 표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일기에서 활동들에 할당한 시간을 가지고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Robinson & Godbey, 1999: 3-8).⁶⁾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 9월 3일부터 12일 사이에 16,375가구의 표본으로부터 10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들이 이틀간의 시간일기를 10분 간격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주된 행동, 동시행동, 행동장소 등을 기록하였다. 한 가구가 이틀간 기록한 시간일기를 두가구가 각각 하루일지를 기록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총 32,750가구가 시간일기를 제공한 셈이며 따라서 최종표본은 32,750가구, 42,973명, 85,9067개의 일기날짜를 포함하고 125개의 행동코드로 분류된

6)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일기를 통한 생활시간에 대한 분석이 전국적인 자료로서는 1980년대 이후 한국방송공사(KBS)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자료는 방송시간편성과 시청률조사라는 특정 목적 하에서 조사된 것이므로 세부적인 생활시간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갖는다. 또한 시간일기를 이용한 생활시간에 대한 많은 조사연구가 개별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이들의 조사는 제한된 조사대상자수와 특정지역, 특정 조사대상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1999년 통계청에서 처음으로 전국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의 표본규모를 가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가지고 생활시간분배 및 그 성격에 대한 비교와 평가가 필요하다.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2) 분석대상 및 분석대상의 특징

199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조사된 32,750가구 중 가구주의 혼인상태 및 가구주와 배우자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라서 가구유형을 분류하여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총 32,750가구 중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자인 경우가 74.9%로 가장 많고 다음이 사별가구로 10.8%, 미혼가구 9.0%, 이혼가구 3.2%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자이면서 부부가 모두 조사된 가구는 22,464가구이다. 이외에 1,925가구는 가구주가 혼인상태는 유배우자라고 응답하였지만 부부 중 한명만 조사된 경우이거나 부부가 서로 다른 날짜에 시간일기를 작성하여 한 부부로 분류할 수 없었던 경우이다.

부부가 모두 조사된 가구 중 남편과 부인 모두 ‘지난 1주간 수입노동이 있었다’고 응답하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 가구는 11,087가구로 전체가구의 45.5%를 차지하고, 남편만 수입노동을 하였다고 응답하여 남편홀벌이가구로 분류된 가구가 8,269가구로 전체가구의 33.9%를 차지한다.⁸⁾ 맞벌이가구가 남편홀벌이 가구보다 약 12%정도 많이 나타나 수치 구성상 맞벌이가구가 보편적인 가구형태가 되어가고 있음이 나타난다. 또한 남편은 수입노동이 없었고 부인이 수입노동을 하였다고 응답한 부인홀벌이가구가 전체 가구의 4.7%에 이르고, 남편과 부인 모두 수입노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부부비취업가구가 전체가구의 8.0%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99년 IMF경제상황이 가구의 경제활동상황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7) 42,973명의 이틀분 시간일기 중 하루의 모든 행동시간의 합이 1,440분이 되지 않는 40개의 시간일기를 삭제하여 총 85,906개의 시간일기가 남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하에서 모든 분석을 시간일기로 분석할 것이며 따라서 85,906명이라고 칭할 것이다.

8) 『경제활동조사』에서 18시간미만 무급가족종사자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처리된다. 이는 1954년에 “국제노동통계 전문가회의”에서 보통 취업시간의 최소한 1/3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를 취업자로 보는 기준이 있었으나, 1982년 “국제노동통계 전문가회의” 이후 취업시간에 상관없이 취업자로 볼 수 있도록 완화되었고 국가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데서 유래한다. 미국은 15시간, 오스트리아는 13시간 등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영업의 비중이 높아 1시간이상의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취업자로 보게 되면 취업자 규모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통상 노동시간의 1/3이상 조건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통계청, 통계자료문의에 대한 답변내용). 그러나 본 논문은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이들의 노동을 임금근로자나 자영자, 고용주와 다르게 취급할 경우 여성의 노동이 평가절하되며 여성의 노동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1시간이상의 무급가족종사자를 경제활동인구로 처리하였다.

〈표 1〉 가구주의 혼인상태 및 경제활동 유형별 가구분류

혼인상태	가구수(%)	
미혼가구	2947(9.0)	
사별가구	3539(10.8)	
이혼가구	1062(3.2)	
유배우가구	24389(74.5)	
미상*	813(2.5)	
전체	32750(100.0)	
유배우 가구	맞벌이가구	11087(45.5)
	남편출벌이가구	8269(33.9)
	부인출벌이가구	1156(4.7)
	부부비취업가구	1952(8.0)
	미상	1925(7.9)
	소계	24389(100.0)

주: 가구주는 조사되지 않고 가구주 이외의 사람이 응답한 가구이다.

한국사회에서 맞벌이가구는 시부보다는 면부나 군부를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며 맞벌이가구의 비율은 각 지역의 유배우 취업여성 중 농립어업종사자의 비율 순위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이 특징이다(김태홍·주재선, 1997: 70-72). 하지만 지금까지의 생활시간연구는 농/임/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독특한 생활시간을 보고하고 있다(문숙재, 1999: 275-293). 이에 유배우자가구 부부 중 한명이라도 직업이 ‘농/임/어업숙련직’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가 맞벌이가구 여성의 이중부담과 생활시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집중하는 시기인 20대-50대의 연령층으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였다. 60세 이상의 연령 층에는 은퇴한 노인들이 포함되며, 19세 이하의 연령층에는 학생들이 포함되어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에 대한 다른 경험을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에 부부 중 한명이 60세 이상이거나 19세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최종 선택되어 분석에 사용된 맞벌이가구는 7,360가구이고 그들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분석대상의 특성

구 분		남성	여성
연령	20대	301(4.1)	839(11.4)
	30대	2610(35.5)	3224(43.8)
	40대	2972(40.4)	2646(36.0)
	50대	1477(20.1)	651(8.9)
학력	초졸이하	609(8.3)	955(13.0)
	중졸	1168(15.9)	1792(24.4)
	고졸	3658(49.7)	3484(47.3)
	전무대졸이상	1925(26.2)	1129(15.3)
직업	전문/관리직	597(8.1)	308(4.2)
	준전문/사무직	1396(19.0)	1216(16.5)
	판매/서비스직	1862(25.3)	3161(43.0)
	조립/기능직	2764(37.6)	1240(16.9)
	단순노무직	741(10.1)	1435(19.5)
종사상 지위	임 금 근로자	직장근무 하청/재택	4069(55.3) 62(0.8)
	고용주/자영자		3101(42.1)
	무급가족사자		128(1.7)
			3562(48.4) 475(6.5) 1367(18.6) 1956(26.6)
가족 형태	부부가족		805(10.9)
	핵가족		5516(75.0)
	직계 가족	부모동거	아버지 어머니 부모
			73(1.0) 733(10.0) 139(1.9)
			94(1.2)
		없음	933(12.7)
막내 자녀 연령	만6세 이하	1명	1335(18.1)
		2명	723(9.8)
	만 7-12세		1738(23.6)
	만13-18세		1734(23.6)
	만19세 이상		897(12.2)
조사 요일	평 일		4504(61.2)
	토요일		1437(19.5)
	일요일		1419(19.3)
소 계		7360(100.0)	7360(100.0)

<표 2>에서 인적상황으로 볼 수 있는 연령은 남성과 여성 모두 30대와 4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학력별로는 고졸자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정도를 이루고 있다. 노동상황을 나타내는 직업별로는 남성의 경우 전문/관리직, 준전문/사무직, 기능/조립직의 비율이 여성보다 많고, 여성은 판매/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 종사상지위는 남성은 고용주/자영자의 비율이 높고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으며 여성은 임금근로자중 가내하청을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월등히 많다.⁹⁾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가구원 명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구의 가족 상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미취학아동을 가진 맞벌이가구의 여성이 이중부 담의 핵심적인 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과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여성의 경제 활동을 하는데 시간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족형태를 구분하여 보았다. 가족형태별로 살펴보면 직계가족비율이 14.1%에 이르러 2001년 현재 전국평균 7.9%(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DB)보다 높다. 이는 맞벌이를 하는 경우 집안 가사일이나 아이돌보기를 친인척에게 맡기거나 보조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김태홍·김미경, 2002: 156). 미혼막내자녀의 연령을 보면 만6세 이하 자녀가 1명 있는 가구와 2명 있는 가구의 비율이 27.9%로 나타난다.

2. 시간의 분류

시간사용에 대한 글들은 전형적으로 시간이 네 가지의 범주들-유급노동, 무급노동, 개인유지, 자유시간—사이에서 할당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유급노동시간은 시장에서 수입을 만드는 활동들에 할애된 시간이다. 무급노동시간은 음식준비, 청소, 세탁, 집관리, 가정경영, 아이돌보기 및 그 외 가족돌보기, 쇼핑 등을 포함한다. 개인유지 시간은 수면, 식사, 씻기, 외모관리, 옷입기, 의료적 치료받기로 구성된다. 자유시간은 나머지 범주이다(Robinson & Godbey, 1997: 3~23). 자유시간에는 여가로 명백히 수행된 활동들에 할애한 시간과 종교활동이나 시민활

9) 이러한 특징은 맞벌이부부의 종사상지위의 결합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다. 맞벌이 가구에서 남편과 부인의 종사상지위의 결합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맞벌이가구 14,270가구에서 남편과 부인이 모두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3,269가구(44.4%)이고, 남편은 고용주/자영자이고 부인이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가 1,926가구(26.2%)로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남편이 임금근로자이고 여성이 고용주/자영자인 경우(834가구, 11.3%), 남편이 고용주/자영자이고 부인이 임금근로자인 경우(766가구, 10.4%), 남편과 부인이 모두 고용주/자영자인 경우(409가구, 5.6%)의 순이고 그 외의 경우는 소수이다. 따라서 여성의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여성의 종사상지위가 임금근로자이거나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가 많고 소수 자영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과 같이 임의의 목적들을 수행하기 위해 할애한 시간 둘 다를 포함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간구분을 따르도록 하며,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행동분류표와 본 글에서 사용할 시간범주와의 관계는 <부표 1>에 나타나 있다.

III. 이중부담과 여성의 시간사용구조

1. 젠더화된 생활시간사용

이 절에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 특히 맞벌이가구 여성의 총노동시간의 양을 남성의 것과 비교하여 여성의 이중부담의 양이 어느 정도 인지 말하고, 남성과 여성의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차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시간사용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맞벌이가구에서 여성의 이중부담의 여부와 그 양을 밝히기 위해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 그리고 그 합인 총노동시간의 성차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알아본 것이 <표 3>이다.

<표 3>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 맞벌이가구 남성들의 유급노동시간이 여성들보다 많으며 무급노동시간은 대부분 여성들이 책임지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에 상관없이 성역할분담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들의 유급노동시간은 부인들보다 85.7분 길다. 그러나 여성도 342.2분이라는 유급노동시간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224.4분이고 남성은 28.1분에 불과하여 남편보다 무급노동시간이 196.3분 길다.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사회적 노동에 진출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여 남성들이 가족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으며 혼인을 통해 독립가정을 형성하는 경우 가정의 일차적 책임은 여성에게 있고 그 일들은 여성이 담당한다는 의식이 확고함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러한 경향은 총노동시간의 구성비율을 보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 남성들의 노동시간은 93%이상이 유급노동으로 채워진다. 하지만 여성들은 총노동시간의 40%는 무급노동에 사용하고 60%만을 유급노동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시간사용 실태는 그들이 현실에서 인식하는 남성과 여성의 가사분담률에 대한 인식이나 맞벌이부부의 집안일 분담에 대한 공평성 인지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성들은 자신들이 20~50%의 가사를 분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여성은 70~80%의 가사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

각한다(함인희·한정자, 2001). 하지만 『생활시간조사』의 결과는 맞벌이가구의 총무급노동시간 252.5분에서 남성이 분담하고 있는 비율은 11.1%에 불과하여 현실생활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가사분담률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맞벌이부부는 집안일을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 남성은 81.7%, 여성은 87.5%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었지만(은기수, 2004) 현실생활에서는 자신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실천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사회의 성평등에 대한 압력과 경험에 남성이 여성과 함께 가사일도 해야 한다는 의식을 높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그들의 가정 안에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표 3〉 총노동시간(주행동시간양)과 노동시간의 구성비율

단위: 분(%)

구 분	여성	남성	차이
-유급노동시간	342.2(60.4)	427.9(93.9)	-85.7
-무급노동시간	224.4(39.6)	28.1(6.2)	196.3
총노동시간	566.5(100.0)	455.9(100.0)	110.6
-가사노동	166.8(74.3)	13.3(47.3)	153.5
-재화 및 용역의 구입	14.7(6.4)	5.8(20.6)	8.9
-가족보살피기	42.8(19.1)	8.9(31.7)	33.9
무급노동시간	224.4(100.0)	28.1(100.0)	196.3

주: 차이=여성의 시간-남성의 시간.

둘째, 무급노동시간의 구성비율을 보면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가족보살피기와 재화와 용역의 구입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가사노동시간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남성들의 무급노동참여형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사노동 중 ‘청소 및 정리(8.4분)’, ‘내구재구매, 수리, 차량 관련 서비스받기(3.1분)’와 가족보살피기 중 미취학아이 보살피기의 ‘책읽어주기·놀아주기(4.1분)’가 대부분이다. 서구사회의 경우에도 여성은 식사준비, 세탁 등의 주된 가사노동을 남성은 장보기 위한 이동, 쇼핑, 수리 등의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Robinson & Godbey, 1997).

이러한 무급노동시간의 구성은 남성들의 경우 무급노동을 하더라도 유급노동과 같이 시작과 끝이 분명한 가사노동을 하며, 가족보살피기노동도 놀이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여성들은 그날그날 처리해야 할 무급노동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

을 드러낸다. 이것은 남성들의 무급노동 시계시간이 여성과 같은 의미일 수만은 없다는 점을 알려준다. 아이들이 물어보는 말에 대답하기, 아이들 밥 먹이기, 설거지하기는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하고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들이지만 자동차의 오일은 다음주에 갈아도 되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인식되기도 하는 일들이다.¹⁰⁾

결국 성역할 분담에 의한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에 있어서의 남녀간 차이는 여성의 이중부담을 결과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여성의 총노동시간이 하루에 평균 111분(1시간 51분) 더 많아 주당 약 13시간의 초과부담을지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 OECD 10개국의 시간일기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전일제 맞벌이 부부들 중 여성의 주당 이중부담시간이 3시간 37분인 것(Bittman & Wajcman, 2000: 174~175)과 비교하면 너무 많은 차이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과중한 이중부담에서 오는 초과 부담은 여성으로 하여금 하루에 약 566.5분(9시간 27분)을 순수하게 노동하는 시간으로 보내게하고 있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유급노동시간이 많고 여성은 무급노동시간이 많지만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총양은 대략 같다는 가설이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¹¹⁾

2.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간사용구조

남성과 여성의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의 차이는 기존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생활시간 사용원리로 설명되었다. 즉 인적상황, 노동상황, 가족상황 등과 같은 특성들이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무급노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가지는 여성은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에 남성과는 다르게 가족상황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상황 변수들이 유급노동시간이나 무급노동시간과 가지는 관계는 다른 변수들과의 상

10)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행동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무급노동시간 중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다른 여가활동 시간과 같이 선호하는 활동들인 반면(1점에서 10점까지의 점수 중 8.8~8.6점에 해당) 청소나 설거지, 세탁, 아이들의 신체적 돌보기 등의 무급노동 활동들은 의료적 처치시간과 함께 가장 싫어하는 활동시간(1점에서 10점까지의 점수 중 4.9~4.7점)으로 나타난다(Robinson & Godbey, 1997: 374).

11) 생활시간일기는 응답자들이 한 것만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중부담의 양은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의 과중한 노동의 양을 나타낼 뿐 그들의 심리정서적 갈등과 역할갈등의 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혼의 취업여성은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성평등의식과 직업의식이 높을수록, 사회활동을 하거나 문화생활을 누릴수록 심리정서적 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장혜경 · 김영란, 1998: 115).

호작용을 통하여 상쇄될 수도 있으며 증폭될 수도 있다. 즉 여성이 남성과 다르게 가족상황에 따라 자신의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을 조절하고 있다는 가설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그러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에 대하여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각 변수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¹²⁾ <표 4>가 이러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표 4>에서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에는 자신의 무급노동시간과 부인의 무급노동시간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은 단지 자신의 무급노동시간과만 관계를 가지고 남편의 무급노동시간과는 관계가 없었다. 여성의 경우 자신의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자신의 유급노동시간만 감소한다는 것은 여성의 노동시간이 남편의 시간과 독립적으로 자신의 시간 안에서만 교환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둘째, 남성과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서로 다르다. 즉 가족형태, 미혼막내자녀의 연령과 학력은 여성의 유급노동시간과만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남성의 경우 종사상지위, 직업, 조사요일이 유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남성의 경우 종사상지위, 직업과 같은 노동상황만이 자신의 유급노동시간과 관계를 가지지만 여성은 가족형태, 미혼막내자녀의 연령과 같은 가족상황이 유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여성의 유급노동시간과 관계를 가질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들 중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먼저, 종사상지위에 따라서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에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가내하청이나 재택근무를 하는 임금근로자나 무급가족종사자들의 경우에도 직장에 다니는 임금근로자나 고용주/자영자들 만큼 유급노동시간이 길다. 따라서 집안에서 일하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내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가족의 소득증대를 위해 짬짬이 일하거나 가족간의 애정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부차적인 노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은 자녀를 보살피고 가사노동이 완수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어디까지나 남편을 지원하는 가족의 보조자로서 인식되고, 자신의 직업이 아닌 남편의 직업으로써 명시된다.

둘째,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른 유급노동시간의 차이를 보면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오히려 길다는 점이다. 우리는 보통 만6세 이하의 막내자녀가 있으면 유급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

12) 수입은 생활시간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1999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안타깝게도 조사되어있지 않다.

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만6세 이하 자녀가 1명일 때에는 48분, 2명일 때에는 59분, 만13-18세 사이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46분 정도 유급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이것은 어린자녀수의 증가가 노동시장 퇴장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만 근로시간 감축과는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성지미, 2002), 집중적인 양육의 부담이 있는 시기에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중에는 전문직과 준전문직의 고숙련 경력직비율이 높고 이 시기 예 오히려 단시간 근로의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황수경, 2003)와 함께 생각해보면 우리사회에서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급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미취학자녀가 있을 때 오히려 유급노동시간을 더 늘리고 있음을 말한다.

셋째, 주목해야 할 변수가 가족형태로 기존연구에서는 여성부모와의 동거가 여성에게 시간자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논문들이 있지만(성지미·차은영, 2001) 오히려 아버지와 동거하는 가족형태를 가진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길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부부가족 다음으로 어머니와 동거하는 여성들의 무급노동시간이 적다. 이는 여성부모와의 동거가 시간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을 경감시켜주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유급노동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여부와 관계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유급노동을 계속하고 있는 여성에게는 이러한 도움이 곧바로 유급노동시간의 증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무급노동시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자신의 유급노동시간과 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이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이 감소하면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면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결국 한 가구 단위에서 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이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통해 무급노동에의 참여를 증가시키고 여성의 무급노동에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단위: 분

구 분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평균		427.9		342.2		28.1		224.4	
학력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초졸이하	-5.69	10.89	75.86 **	10.25	-3.69	2.88	23.30 **	6.27
	중졸	5.95	9.07	52.94 **	9.21	-2.76	2.40	14.73 *	5.63
	고졸	14.41	7.01	27.90 *	8.17	-0.68	1.85	10.70	4.98
	초대졸	14.23	10.06	19.12	10.35	-0.97	2.65	6.63	6.32
연령	대졸이상(기준)								
	20대	24.56	13.84	3.13	10.57	2.92	3.66	-26.91 ***	6.44
	30대	1.98	9.07	5.70	9.24	-5.79	2.39	-25.06 ***	5.63
	40대	0.70	7.63	2.44	8.07	-3.40	2.01	-17.61 **	4.92
	50대(기준)								
종사 상 지위	임금 직장(기준)								
	근로자 하청/재택	10.79	24.73	11.47	8.28	-1.35	6.53	53.98 ***	5.01
	고용주·자영자	-17.34 *	5.43	4.41	5.55	-3.77 *	1.43	14.73 ***	3.38
	무급가족종사자	-169.8 ***	18.03	2.21	5.01	8.64	4.79	31.48 ***	3.03
	단순노무직(기준)								
직업	전문/관리직	-44.70 **	11.79	40.47 *	12.28	-0.23	3.12	3.32	7.48
	준전문/사무직	-56.78 ***	9.56	5.85	7.09	-4.31	2.53	0.40	4.43
	서비스/판매직	38.40 ***	9.41	69.42 **	5.81	1.35	2.49	3.09	3.57
	기능/조립직	-9.12	8.19	53.14 **	6.44	-4.86	2.16	0.88	3.94
	단순노무직(기준)								
가족 형태	부부가족(기준)								
	핵가족	36.31	20.78	1.19	17.47	-0.03	5.48	22.99	10.66
	부부	25.67	28.56	57.74 *	24.09	6.01	7.54	34.76	14.69
	직계 가족	37.60	20.20	0.99	16.98	-0.16	5.33	5.20	10.36
	동거 부모	42.01	26.01	26.24	21.87	0.24	6.87	14.09	13.34
미혼	자녀동거	47.50	23.97	20.81	20.28	18.91 *	6.32	21.85	12.36
	없음(기준)								
	만6세 1명	-2.34	20.53	47.86	17.36	16.96 *	5.41	69.89 ***	10.56
	2명	2.40	21.19	59.05	17.87	20.55 **	5.57	86.68 ***	10.86
	만7-12세	-24.08	20.09	30.05	17.07	2.82	5.30	42.35 ***	10.41
연령	만13-18세	-29.25	19.89	45.84	16.87	-1.54	5.25	27.91 *	10.29
	만19세 이상	-45.68	19.87	12.83	16.77	-4.62	5.25	-0.00	10.23
	평일	198.70 ***	5.93	141.90 **	5.00	-3.29	1.71	17.99 **	3.33
	토요일	159.00 ***	7.22	107.52 **	6.10	-2.45	1.98	11.47 *	3.86
	일요일(기준)								
조사 요일	남편의 유급노동시간	-		-		-0.09 ***	0.00	0.06 ***	0.01
	부인의 유급노동시간	-		-		0.01 ***	0.00	-0.37 ***	0.01
	남편의 무급노동시간	-1.23 ***	0.04	0.02	0.04	-		-	
	부인의 무급노동시간	0.06 **	0.02	-0.95 **	0.02	-		-	
	INTERCEPT	316.74	***	326.83	***	67.80	***	250.04	***
F value		97.38	***	221.22	***	47.75	***	212.74	***
DF		28		28		28		28	
Adj R2		0.2683		0.4559		0.1510		0.4462	

주: * p<.01, ** p<.001, *** p<.0001.

남성과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도 서로 다르다.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종사상의 지위, 가족형태, 막내자녀의 연령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에 가족상황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과 다르게 가족 형태와 막내자녀의 연령이 무급노동시간에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남성들은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직계가족형태에서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며, 만6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이나 2명 있을 때 자녀가 없을 때보다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력이나 연령, 직업에 따른 집단간 무급노동시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연구에서 학력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위세가 높을수록 무급노동에의 참여가 높다는 연구결과들(박민자, 1992; Bianchi & Milkie & Sayer & Robinson, 2000)과 다르다.

반면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학력, 연령, 종사상지위, 막내자녀의 연령, 조사요일 등이었다. 남성과 다르게 여성의 학력이라는 변수가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학력이 낮을수록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학력 취업여성이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임금률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늘려야 하는 현실을 시사해 주는 동시에 교육수준이 높은 기혼여성들은 선택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학력 여성들은 가족의 든든한 지원과 서비스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무급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진수희, 1999; South & Spitz, 1994). 그리고 연령이 남성과 다르게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다면 50대에 비해 젊을수록 무급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있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가내하청이나 재택근무를 하는 여성은 54분, 고용주/자영자는 15분, 무급가족종사자는 32분 정도 무급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유급노동시간에 종사상지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던 것과 비교하면 여성이 가내하청이나 재택근무,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의 일을 선택하는 것은 유급노동시간의 길이에는 상관없이 무급노동과 결합시키기 위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막내자녀의 연령별로는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만6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있을 때에는 70분, 2명일 때에는 87분, 만7-12세사이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42분, 만13세-18세 사이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28분 정도 무급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유급노동시간이 오히려 길게 나타났던 점과 함께 생각해 보면 맞벌이가구에서 미취학자녀의 존재는 여성의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부담을 함께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취학자녀의 존재는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여성에게 그 영향이 더強く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남성과 여성의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을 설명해 주는 변수가 서로 같지 않으며 여성의 노동시간은 남성과 다르게 가족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생활시간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하지만 기존연구결과와 다르게 가내하청/재택근무, 자영, 무급가족종사와 같은 종사상지위와 미취학자녀의 존재는 여성에게 유급노동시간을 조절하는 기제가 되지 못했고 무급노동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점이 한국사회 여성의 이중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유급노동시간의 성격

1. 휴일노동과 야간노동의 회피

이 절에서는 맞벌이가구 여성들이 이중부담을 안게 되면서 유급노동에 있어서 어떠한 시간특성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밝혀진 사실들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가지고 경험적으로 증명해보고자 한다.

여성의 무급노동에의 일차적 책임이 그들의 유급노동시간에 가져오는 첫 번째 특징은 노동시간대의 선택에 있어서 여성의 남성보다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을 회피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은 가족공유시간과 사회적 활동들에의 참여가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여성들은 가족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노동을 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야간노동시간을 회피한다는 명제는 밤8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야간 유급노동시간양으로, 휴일노동을 회피한다는 명제는 일요일에 이루어지는 유급노동시간양으로 측정하였다.

<표 5>에서 보듯이 우리사회에는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일 맞벌이가구 남성의 경우 야간노동에의 참여자 비율이 41%에 이르고, 여성은 37%에 이르며 참여자들의 노동시간이 약 100분에 이르고 있다. 이는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밤 9시 40분정도까지 유급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일보다는 토요일, 일요일에 야간노동에의 참여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일요일에 야간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평균 유급

노동시간은 평일보다도 오히려 길었다. 야간 노동에의 참여비율이 높았듯이 우리 사회에서 일요일에 노동하는 사람의 비율도 남성과 여성 모두 절반이 넘고 일요일에 노동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4시간이상의 장시간 노동인 것으로 나타난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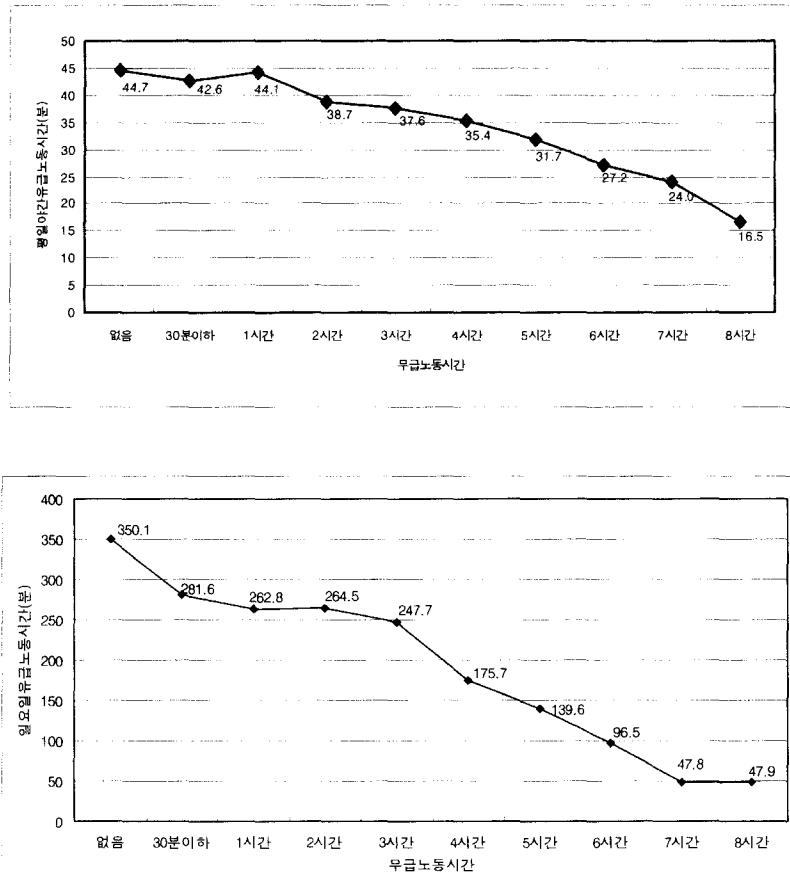
〈표 5〉 야간 유급노동과 휴일 유급노동에의 참여자비율과 시간양

구 분		남성	여성
야간유급노동 참여자비율과 참여자평균시간(%(분))	평 일	40.5(101.7)	37.4 (96.5)
	토요일	36.2(107.0)	35.6(100.0)
	일요일	28.8(119.2)	29.5(102.5)
휴일 유급노동	참여자비율 (%)	없 음	38.9
		4시간이하	14.1
		4시간이상	46.0
	참여자 평균시간(분)	416.4	375.1

주: 밤 8시 이후의 노동을 야간노동으로, 일요일노동을 휴일노동으로 정의하였다.

결국 맞벌이가구 여성은 야간노동에의 참여자비율과 야간 유급노동시간양만을 살펴보면 꼭 여성이 남성보다 야간노동이 적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휴일노동의 경우에도 맞벌이가구 남성들의 일요일 노동에의 참여 비율이 여성보다 약간 높고 평균 시간도 약간 긴 것으로 나타나지만 맞벌이가구 여성의 일요일 유급노동 참여비율도 56%에 이르고 참여자들의 유급노동 시간도 375.1분으로 상당히 길다.

13) 영국사회에서 한 달에 4번 이상 오후 6시 이후에 유급노동을 한 경우, 오후 11시 이후에 노동 한 경우, 야간 교대근무를 한 경우를 계산해본 결과 남성의 33%, 여성의 14%가 여기에 해당되었다(Fagon, 2001: 1204).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수치는 우리사회에 광범위한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이 존재하며 이 사실이 여성에게도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에의 참여비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무급노동시간에 따른 평일 야간 유급노동과 일요일 유급노동의 시간양

그러면 한국사회에서 광범위한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은 남성과 여성이 유급노동을 할 때 똑같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무급노동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인가? 이에 무급노동시간양에 따른 야간 유급노동시간양과 휴일 유급노동시간양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맞벌이가구에서 무급노동시간의 양에 따라서 평일 야간 유급노동시간과 일요일 유급노동시간이 감소하는 선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은 종사상지위나 직업과 같은 노동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며 무급노동시간에 따른 차이가 다른 변수들을 통제

할 때에도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가지는 차이인지 알 수 없다. 이에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맞벌이가구 여성의 남성보다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는 무급노동시간의 양에 따른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부표 2>에서 보듯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때 여성은 남성보다 밤8시 이후의 야간유급노동에 10분 더 적게 참여하고, 일요일 유급노동에는 65분 더 적게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무급노동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야간 유급노동시간과 일요일 유급노동시간이 적었다. 결국 무급노동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여성의 남성보다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을 더 적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부담을 가지는 여성의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집단 여성들이 야간유급노동과 휴일유급노동을 하고 있을 것인가? <부표 3>에서 보듯이 휴일과 야간에 유급노동시간이 많은 집단은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고용주/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여성들이었다. 또한 직장에 다니는 임금근로자보다는 가내하청이나 재택근무를 하는 임금근로자들의 일요일과 야간 유급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그리고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을 회피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만6세 이하의 미취학아동이 있는 경우와 만7세에서 19세 이하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야간 유급노동시간이 더 길게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2. 단시간노동의 선택

유배우자 여성의 유급노동공급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제약은 무급노동에의 시간배분으로 단시간 근로가 기혼여성의 대안적 고용형태로 선호된다(황수경, 2003; Fagon, 2001; 성지미, 2002). 노동시간양은 다른 활동들을 위해 남겨진 시간의 양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을 가진 맞벌이가구의 여성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족을 위해 남겨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양을 조절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단시간노동을 선호하고 따라서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은 남성보다 항상 적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성의 무급노동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으로 단시간의 유급노동을 선택한다는 명제는 주당 유급노동시간의 양과 하루 유급노동시간의 양으로 파악될 수 있다.

〈표 6〉 주당 유급노동시간과 하루 유급노동시간의 양에 따른 참여자 비율

단위: %

구 분		남성	여성
주당 노동시간	50시간이상	69.1	50.6
	35시간이하	8.5	23.9
	평균시간(시간)	58.4	50.9
하루 노동시간 (평일)	8시간초과	54.8	33.6
	8시간이하	30.2	34.9
	5시간이하	15.0	31.5
	평균시간(분)	427.9	3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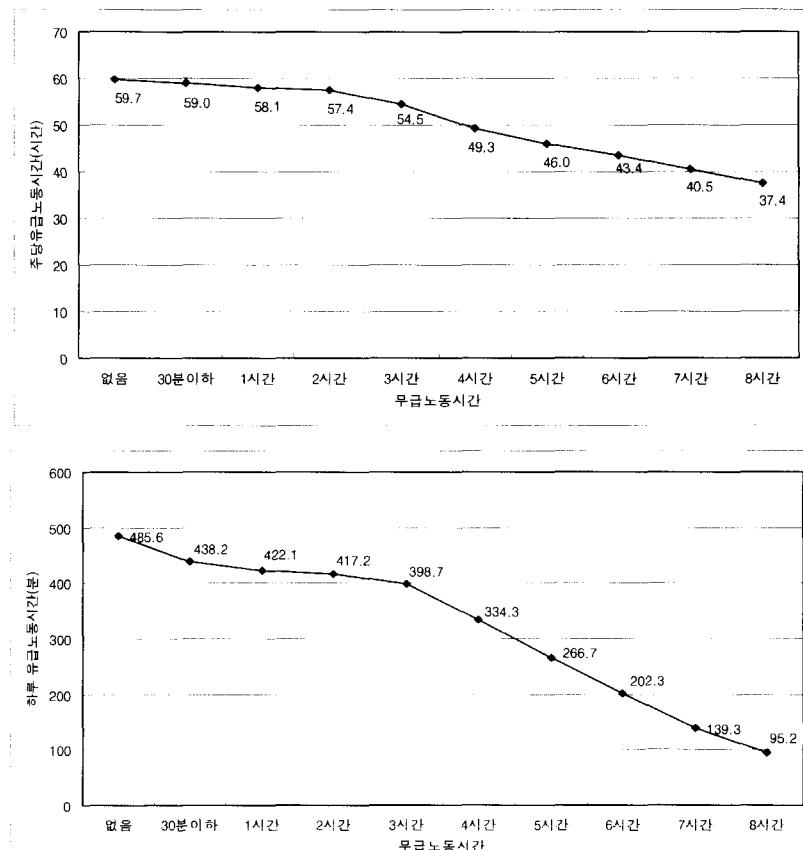
생활시간조사에 나타난 주당 유급노동시간과 하루 유급노동시간의 양에 대한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우리사회는 장시간 노동의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미국사회의 경우 1985년의 CPS(Current Population Survey)자료에서 25.5%가 주당 50시간이상 일한다고 평가하고 (Robinson & Godbey, 1997: 89), 영국사회의 경우에는 1995년에 50시간이상의 장시간노동을 하는 남성은 29%, 여성은 9%로 나타난다(Fagon, 2001: 1203). 하지만 한국사회의 경우 남성은 69%, 여성도 51%가 주당 50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미국사회에서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맞벌이가구에서 남성은 44.8시간, 여성은 36.4시간인데 비해(Jacobs & Gornick, 2002) 한국사회 남성은 58.4시간, 여성은 50.9시간으로 나타나 그 절대적인 양에 있어서 상당히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루생활시간 안에서도 8시간을 초과하는 유급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남성의 경우 55%에 이르고 여성은 34%에 이른다.¹⁴⁾

그러나 광범위한 장시간노동의 경향 속에서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은 주당 50시간이상의 장시간노동을 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적고 주당 35시간이하의 단시간노동을 하는 경우는 남성은 8.5%에 불과하지만 여성은 23.9%에 이른다. 하루 유급노동시간의 길이 또한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적고 하루에 5시간이하의 유급노동시간을 보고한 사람이 남성은 15%에 불과하지만 여성은 32%에 이른다. 그 결과 주당 평균노동시간도 남성은 58.4시간, 여성은 50.9시간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약 7.5시간 길고, 하루

14) 이는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이 노동력 과잉의 상태에서 파트타임이나 유연한 근무시간의 이용 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남성과 여성의 차별화된 노동시장구조 안에서 기혼여성이 남성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이숙진, 1998) 생활시간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평균노동시간도 남성은 427.9분, 여성은 342.2분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약 85.7분 길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간이 남성보다 단시간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여성의 유급노동에서의 단시간노동은 무급노동시간의 영향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무급노동시간양에 따른 주당 유급노동시간과 하루 유급노동시간의 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무급노동시간이 길수록 주당유급노동시간과 하루유급노동시간의 양이 적어지는 선형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무급노동시간에 따른 주당 유급노동시간과 하루 유급노동시간

위의 주당 유급노동시간과 하루 유급노동시간의 양이 남성보다 여성이 적고,

무급노동시간이 긴 사람들일수록 유급노동시간이 적어진다는 사실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부표 2>의 주당유급노동시간의 양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무급노동시간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주당유급노동시간이 적게 나타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주당유급노동시간이 짧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일단 유급노동에 참여하여 맞벌이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남성과 같은 주당 노동시간조건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루 유급노동시간양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100 분정도 유급노동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급노동시간이 길수록 유급노동시간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급노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으로 이중부담을 가지는 맞벌이가구 여성은 하루 생활시간 안에서 단시간의 유급노동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¹⁵⁾

그러면 어느 집단 여성들이 특히 노동시간이 짧을 것인가? 하루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집단간 차이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고 주당유급노동시간에 대한 집단간 차이는 <부표 3>과 같다. 먼저 학력이 낮을수록, 판매/서비스직과 기능/조립직에서 그리고 고용주/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여성들의 하루유급노동시간과 주당유급노동시간이 같다. 가내하청이나 재택근무를 하는 여성들의 주당유급노동시간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임금근로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왔지만 하루 유급노동시간은 차이가 없다. 또한 만6세미만의 미혼막내자녀가 있을 경우 유급노동시간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하루유급노동시간과 주당유급노동시간 모두 그렇지 않았다.

3. 집안 유급노동의 선택

무급노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으로 집안이 여성이 있어야 할 공간으로 인식되고 무급노동에 유급노동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여성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집안이나 집 부근에서 유급노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15) 주당 유급노동시간의 양은 ‘지난 1주간 총 몇 시간을 일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기록이다. 반면 하루 유급노동시간의 양은 시간일기에 나타난 유급노동시간의 양이다. 주관적인 주당유급노동시간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는 성별로 차이가 없지만 시간일기에 나타난 하루유급노동시간은 성별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주당 유급노동시간과 하루 유급노동시간의 차이는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응답과 시간일기 사이에는 체계적인 편차가 존재한다는(Robinson & Godbey, 1999; Jacobs, 1998) 기존 논의를 참조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집단별로 주관적인 응답과 시간일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는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다. 집안이나 집 부근에서 일하는 것은 가사책임과 양립되고 집 테두리 내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일인 농사짓기나 가축 기르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커다란 마찰없이 여성이나 남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김경애, 1999: 83). 『생활시간조사』 자료가 행동이 이루어진 집안과 집밖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루어진 유급노동시간양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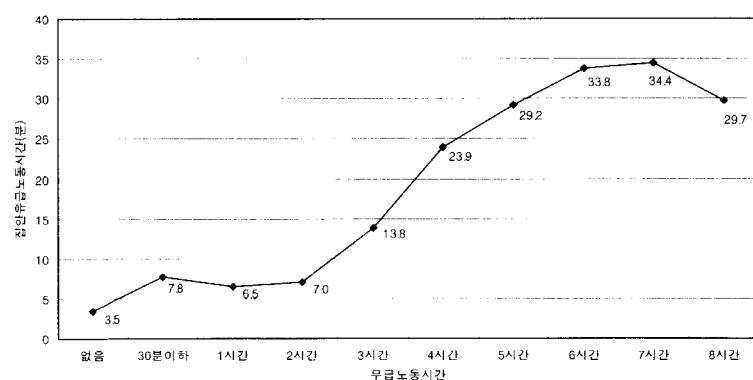
먼저,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맞벌이가구 여성의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이 남성집단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표 7>에서 보듯이 집안에서 유급노동하는 사람의 비율과 시간양은 모든 요일에서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높다. 여성은 남성보다 집안에서의 유급노동 참여자비율이 5% 이상 높고 집안에서 유급노동을 할 경우 그 시간양도 남성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러한 여성의 집안에서 유급노동을 하는 경향은 여성들이 무급노동에의 책임으로 유급노동을 집안에서 행하고자 하기 때문인가? <그림 3>의 무급노동시간에 따른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양을 살펴보면 무급노동시간이 길수록 집안에서 하는 유급노동시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집안에서 유급노동을 한 사람의 비율과 시간양

단위: %(분)

구 분	남성	여성
평 일	8.5(63.3)	13.6(166.1)
토요일	7.9(74.4)	13.4(144.8)
일요일	7.3(67.7)	10.6(137.9)



<그림 3> 무급노동시간에 따른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

집안에서 유급노동하는 비율과 시간양은 다양한 노동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성들의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양이 남성보다 많고 무급노동시간이 길수록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이 많아 진다고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부표 2>에서 여성은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양이 남성보다 5분정도 길며, 무급노동시간양이 많을수록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이 많아졌다. 결국 무급노동을 책임지면서 이중부담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남성보다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양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부표 3>에서 보듯이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양은 종사상지위와 요일에 따른 집단간 차이만 가진다. 가내하청이나 재택근무를 하는 여성들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들보다 199.3분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이 길며, 고용주/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들 또한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이 길다. 그리고 평일은 일요일 보다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살펴볼 때 주목할 점은 미혼막내자녀의 연령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V. 결론

한국사회는 성역할 분담에 의한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에 있어서의 남녀간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는 여성의 이중부담을 결과하고 있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여성의 총노동시간이 남성보다 111분 더 많아 하루에 평균 1시간 51분의 초과부담을 지고 있었으며 이를 주당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3시간의 차이이다. 결국 여성은 이중부담에서 오는 초과 부담으로 하루에 약 566.5분(9시간 27분)을 순수하게 노동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이중부담은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간사용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었다.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은 노동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은 가족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무급노동시간은 가족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 가족상황은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시간사용에 대한 기준연구결과와 다른 점은 먼저, 학력이 높고, 직업위세가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생활시간자료에서는 남성의 학력, 연령, 직업은 무급노동시간과 연관이 없었다. 둘째, 미혼막내자녀의 연령은 여성의 유급노동시

간을 단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생각되었지만 그렇지 않았고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을 모두 늘리고 있었다. 셋째, 가내하청/재택근무, 자영, 무급가족종사와 같은 여성이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결합시키기 위해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종사상지위는 유급노동시간의 길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무급노동시간만 늘리고 있었다. 이러한 종사상지위와 박내자녀연령에 따라 유급노동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개인상황에 따라 쉽게 노동시간을 조절할 수 없는 한국사회 여성노동시장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며 이것이 여성의 이중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보다 무급노동에의 일차적 책임으로 야간유급노동이나 휴일유급노동시간을 줄이고, 단시간노동을 선택하고, 집에서 하는 유급노동시간을 길게 하면서 가족생활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가족과 일을 양립시키기 위해 취하는 이러한 노동방식은 가족의 필요에 따라 유급노동의 형태를 스스로 조절해가는 현실적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여성노동자 개인적으로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해가는 노동양식으로 노동의 불안정성을 만들어내는 요인이기도 하다(신경아, 2001: 107-108). 경제활동을 한다할지라도 주말 노동을 회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감독자의 통제상황에서 벗어난 여성은 보조적인 노동력을 형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을 연결시키고 노동시간의 양으로 노동에의 헌신을 측정하는 문화에서 적은 양의 노동시간은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을 주변화시키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서구사회와 비교하면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야간노동과 휴일노동, 장시간노동이라는 남성적 노동조건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미취학자녀의 존재가 이러한 여성적 유급노동시간의 특징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었다.¹⁶⁾

특히 여성내부집단에서 고용주/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여성들, 가내하청이나 재택근무를 하는 임금근로자 여성들, 판매/서비스직과 기능/조립직의 학력이 낮은 여성들은 야간노동이나 휴일노동,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이 길뿐 아니라 절대적인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도 길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낮은 비정규직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중부담의 양이 더욱 많고 유급노동시간이 더욱 주

16) 여성적 직업이 가정과 직장을 병립하기에 그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어떤 논자들은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의 특성이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격리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여성의 선호(preference)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한다(Hakim, 1991). 또한 여성이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을 조절하는 태에는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논자들도 있다. 모성이 강조되는 정도, 국가가 가진 고용법규, 아동 육아시설 보급의 정도 등이 부부간 노동시간이 조직화되고 보상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Fagan, 2001: 1209).

변화되면서 여성노동시간이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더 많은 평등과 함께 파트너로서 대우받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양쪽 모두에게 집밖에서 일할 자격이 주어졌고 아이를 돌보는 것은 부모 모두의 책임으로 되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 배우자들은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Beck & Beck, 1999, Giddens, 1995). 그러나 현실생활에서는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에서 남편과 부인의 성에 의한 일의 분리나 전담, 일의 양과 내용의 불공평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었다. 여성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부부는 평등하다고 생각하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만 하는 노동이 있고 가족과 노동시장에서 상이한 위치와 기대로 서로 다른 일상생활시간을 경험하는 것은 이제 개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이다.

참고문헌

- 김경애(1999), 『한국여성의 노동과 섹슈얼리티』, 풀빛.
- 김미하(1990), “노동자가족의 성별분업: 남성의 양육참여를 중심으로”, 『한국 가족론』, 까치.
- 김영옥·김경희(2004), “여성노동정책의 한계와 새 패러다임 모색”, 『한국 여성정책의 뉴 패러다임 정립』, 여성부.
- 김은희(1993), “일, 가족, 그리고 성역할의 의미: 한국의 산업화와 신중간층의 가족이념”, 한국 사회사 연구회 편, 『한국근현대 가족의 재조명』, 문학과 지성사.
- 김태홍·김미경(2002),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홍·주재선(1997), “맞벌이부부의 가구특성과 고용구조”,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69-86.
- 김효선(1987), 『회사원생활을 통해서 본 한국남자의 소외와 적응』,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문숙재(1997), 『생활시간연구』, 신정.
- 문유경(1997), 『직업상의 성차별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박민자(1988), 『자영소상인 가족의 노동력재생산 방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_____(1992), “부부관계의 평등성에 관한 연구”, 『덕성여대논문집』 제21집:

3-31.

- 성지미(2002),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제25권 제1호: 161-182.
- 성지미·차은영(2001), “세대간 동거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노동경제논집》 24: 97-124.
- 손승영(1999), “비공식부문 여성의 일과 삶의 질”, 《여성의 일과 삶의 질》, 생각의 나무.
- 신경아(2001), “노동시장과 모성, 가족의 문제: 남성중심적 노동자모델을 넘어 서”, 《경제와 사회》 제51호: 97-122.
- 우에노 치즈코·조한혜정(2004), 《경계에서 말한다》, 생각의 나무.
- 윤기수(2004), “가족가치관과 혼인 및 출산”, 《전국가족조사》에 따른 한국가족의 현실과 정책전망, 여성부.
- 윤기수·박수미(2002), “여성 취업이행 경로의 생애과정 씨퀀스 분석”, 《여성의 생애와 취업: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학술세미나》, 한국여성개발원.
- 이숙진(1998), “경기침체와 여성고용: 유통업의 영업시간과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4권 1호: 111-143.
- 이숙현(1995), “남성의 취업과 가족상호작용-대기업사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9: 271-289.
- 이효재·지은희(1988), “한국노동자계급가족의 생활실태: 노동력 재생산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2집: 69~97.
- 장혜경·김영란(1998), 《취업주부의 역할분담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정자환(2002), “여성노동과 가족: 여성노동자에게 있어 가족만들기는 가능한가”, 《성평등연구》 2: 1-26.
- 조미환(1996),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성은(1998),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조옥라·신경아(2001), “21세기 가족과 모성의 변화”, 《여성연구논총》, 성신여대 여성연구소: 111-137.
- 진수희(1999), “전문직여성의 일과 삶의 질”, 《여성의 일과 삶의 질》, 생각의 나무.
- 최희경(1995),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관계: 직장-가정갈등과 개인차변인, 가정변인, 직장 변인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통계청, 통계DB, www.nso.go.kr.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생활시간사용과 시간갈등』,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 DB, www.kwdi.re.kr.
 합인희 · 한정자(2001), “여성의 가족과 일의 조화에 대한 국민 체감의식 연구”, 『여성학논집』 제18집.
 황수경(2003),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단시간 근로”, 한국노동연구원자료.

- Beck, Ulrich & Beck-Gernsheim (1990), *Das ganz normale Chaos der Liebe*, 강수영 · 권기돈 · 배은경 옮김, 1999,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새물결.
- Bianchi, S. M. & M. Milkie & L. Sayer & J. Robinson (2000), “Is Anyone Doing the Housework? Trends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9(1): 191-228.
- Bittman, Michael & Judy Wajcman (2000), “The Rush Hour: The Character of Leisure Time and Gender Equity,” *Social Force*, September79(1): 165-189.
- Clarkberg, Marin & Phyllis Moen (2001), “Understanding the Time-Squeeze: Married Couples' Preferred and Actual Work-Hour Strategi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44 No.7, Sage Pub.: 1115-1135.
- Fagan, Colette (2001), “The Temporal Reorganization of Employment and the Household Rhythm of Work Schedul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44, No. 7: 1199-1212.
- Gershuny, Jonathan (2000), *Changing Times*, Oxford University Press.
- Giddens, A. (1995), *Sexuality, Love &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배은경 · 황정미 옮김, 2001, 『현대사회와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 Glucksmann, Miriam A. (1998),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 A Theoretical and Historical Exploration of Temporality and Gender,” *Sociology* 32: 239-58.
- Hakim, C. (1991), “Grateful Slaves and Self-made Women Fact and Fantasy in Women's Work Orient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7(2): 101-121.

- Hermermash, Daniel S. (1998), "When We Work," *AEA Papers and Proceedings*, Vol. 88 No. 2: 321-325.
- Hochschild, Arlie R. (1989), *Second Shift*, Viking, 백영미 옮김, 2001, 『돈 잘 버는 여자, 밥 잘하는 남자』, 아침이슬.
- Jacobs, Jerry A. (1998), "Measuring Time at Work: An Assessment of the Accuracy of Self Reports," *Monthly Labor Review*. 121(12): 42-53.
- Jacobs, Jerry A. & Janet C. Gornick (2002), "Hours of paid work in dual-earner couples: the U.S.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Sociological Focus* 35(2): 169-187.
- Nock, Steven L. & Paul W. Kingston (1989), "The Division of Leisure and Work," *Social Science Quarterly* 70: 24-39.
- Robinson, John P. & Geoffrey Godbey (1997),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Schor, Juliet B. (1992), *The Overworked American: The Unexpected Decline of Leisure*, Basic Books.
- South, Scott J. & G. Spitze (1994), "Housework in Marital and Nonmarital Househol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327-47.

〈부표 1〉 시간분류와 행동분류

시간분류	행동분류	『생활시간조사』 자료 행동분류표의 내용
개인유지시간	개인유지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건강관리 등
유급노동시간	일	고용된 일 및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일, 농임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자가소비를 위한 농임어업일, 구직활동, 일관련 물품구입, 기타 일관련 행동
무급노동시간	가사노동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가정경영, 그 외 집관리, 기타가사일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시장보기, 쇼핑하기, 내구재 구매관련 행동, 가재도구·집수리 서비스받기, 세차·차량관련 서비스받기
	가족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초·중·고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여가시간	교제활동	참여 및 봉사활동, 종교활동, 교제활동, 유흥
	레저활동	일반인의 학습,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대중매체 활동	TV, 신문, 잡지, 라디오, 비디오, CD·Tape, 컴퓨터정보이용
학습시간	학생의 학교학습	학교학습, 학교외 학습, 학습관련 물품구입
이동시간	이동활동	각 행동관련 이동,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부표 2〉 유급노동시간의 성격에 대한 회귀분석

구 분		주당 유급노동시간 (시간)	하루 유급노동시간 (분)	야간 유급노동 시간양(분)	일요일 유급노동 시간양(분)	집안에서의 유급노동 시간양(분)
전체평균		54.3	385.0	37.15	232.03	12.88
성	남성(기준)					
	여성	-0.19	-100.45 ***	-10.27 ***	-65.37 ***	5.48 ***
무급노동시간		-0.05 ***	-0.99 ***	-0.09 ***	-0.79 ***	0.002
INTERCEPT		47.01	261.63	15.69	181.49	-1.85
F value		144.03 ***	307.99 ***	78.33 ***	24.70 ***	276.62 ***
DF		24	26	27	25	27
Adj R2		0.2017	0.3687	0.1202	0.1670	0.3274

주 1) * p<.01, ** p<.001, *** p<.0001.

2) 표에 나타나있지 않지만 학력, 연령, 노동시간, 종사상자위, 직업, 가족형태, 미혼막내자녀 연령, 조사 요일 등을 더미변수로 만들어 통제하였다.

〈부표 3〉 여성내부집단의 유급노동시간의 성격

구 분		주당 유급노동 시간양(시간)	야간 유급노동 시간양(분)	일요일 유급노동 시간양(분)	집안에서의 유급노동 시간양(분)
전체평균		50.9	34.9	375.1	20.4
학력	초졸이하	9.1 ***	4.9	110.0 ***	7.0
	중졸	8.0 ***	4.7	79.4 *	4.1
	고졸	4.9 **	5.1	54.0	-0.7
	초대졸	3.2 *	-0.4	22.5	3.3
대출이상(기준)					
연령	20대	3.0	7.9	-46.7	-1.9
	30대	2.9 *	7.6	-24.0	2.7
	40대	0.9	3.9	-31.7	2.1
	50대(기준)				
노동 시간	시간제	-	-9.7 ***	-82.9 ***	0.6
	전일제(기준)	-			
종사상 지위	임금 직장(기준)				
	근로 하청/채택	-5.5 ***	38.2 ***	72.3 *	199.3 ***
	고용주·자영자	6.6 ***	25.8 ***	21.4	9.7 ***
	무급가족종사자	3.5 ***	21.7 ***	57.8 ***	8.8 ***
직업	전문/관리직	8.8 ***	-3.2	-8.5	1.6
	준전문/사무직	3.2 ***	-3.6	-13.4	6.3
	서비스/판매직	14.1 ***	28.7 ***	100.9 ***	-5.4
	기능/조립직	6.8 ***	-2.9	-11.1	1.3
단순노무직(기준)					
가족 형태	부부가족(기준)				
	핵가족	-4.3	-11.0	25.6	-7.8
	직계 가족	아버지	4.1	5.1	151.9
		부모 어머니	-0.6	-12.4	15.9
	동거 부모	-2.3	2.9	16.1	-5.7
자녀동거		4.3	-4.3	8.3	-1.7
없음(기준)					
미혼	만6세 1명	5.3 *	18.2 *	25.5	7.4
	이하 2명	5.3 *	11.8	55.2	11.9
	만7-12세	4.7	15.1 *	19.2	10.3
	만13-18세	7.9 ***	18.8 **	12.6	6.9
막내 자녀 연령	만19세 이상	5.3 *	13.8	-11.0	6.9
	평일	-	2.7	-	6.5 **
	토요일	-	1.7	-	2.6
	일요일(기준)	-	-		
무급노동시간		-0.1 ***	-0.1 ***	-0.7 ***	-0.008
INTERCEPT		42.0	18.0	282.2	-2.7
F value		101.4 ***	62.3 ***	33.6 ***	168.8 ***
DF		25	28	26	28
Adj R2		0.2543	0.1892	0.3744	0.3811

주 * p<.01, ** p<.001, *** p<.0001.